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시행령 기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높이 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별표5 제2호 중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 기준 삭제

- 1)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정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- 2) 시행령에서는 추가로 해당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허용높이를 규정하고 있어 지형 및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법률에서 허용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
- 3)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삭제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용높이를 보장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가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2호 중 “말하며,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,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5]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(제10조 관련) 1. (생략) 2.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, <u>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,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.</u>	[별표5]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(제10조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시설기획과	
연 락 처	(02) 748 - 5845